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0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가. 기금사업의 목표
 -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
- 나.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
 -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

5.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
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4년도 말 조성액 [㉠]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 [㉡] $e = d + a$	비고
		수입 [㉢]	지출 [㉣]	증감 [㉤] $d = b - c$		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1,425,003	682,526	6,985,877	-6,303,351	15,121,652	

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5년도 말 조성액 [㉠]	융자금 미회수 채권 [㉢]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[㉣]	총 조성규모 [㉤] $d = a + b - c$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5,121,652	0	0	15,121,652

다. 자금 운용 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
계	682,526	745,451	-62,925
이자수입	682,526	745,451	-62,925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계	6,985,877	0	6,985,877
일반회계 전출	6,985,877	0	6,985,877

6. 검토의견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과 각종 회계, 기금의 통합적 관리 추진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근거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음.
-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
 -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- 결산 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-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-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용도
 -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 -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 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-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-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9억 8,587만 7천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9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[시행 2024. 7. 1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07호, 2024. 7. 18.,
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)

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통합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
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기금의 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

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24.7.18.>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용자

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

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24.7.18.>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21.12.31., 2024.7.18.>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

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7.18.>

1.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
3.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5.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24.7.18.>

제6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(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,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

예치·관리하고, 제12조제1항의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7.18.>

제12조(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<2024.7.18.>]